

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2005년 구미시경로회관 부지(구미시 산책길 51)에 “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”이 개관되면서,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,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」의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소관 실·과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류 은 주
	담 당	이 재 근
	담 당 자	윤 효 정 (480-5155)